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3. 6.

운영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18년 2월 19일

나. 발 의 자 : 김용범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 2018년 2월 22일

라. 상정일자 : 제20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8.3.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용범 의원)

가. 제안이유

-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민주주의 지방자치
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
토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청소년의회교실”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계획의 수립·시행과 운영계획에 포함될 내용, 성과 평가 결과
의 운영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청소년의회교실 대상자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청소년의회교실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우수한 학교 또는 개인에게 대하
여는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최광묵)

- 본 조례 제정안은 청소년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영등포구의회가 매년 시행에 오던 청소년의회교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계속성과 관리 운영상 내실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용범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7
----------	-----

발의년월일: 2018년 2 월 19 일

발 의 자: 김용범 의원 외 4명

1. 제안이유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토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소년의회교실”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나.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계획의 수립·시행과 운영계획에 포함될 내용
성과 평가 결과의 운영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다. 청소년의회교실 대상자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 라. 청소년의회교실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우수한 학교 또는
개인에게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 다. 입법예고: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영등포구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교실"이란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① 영등포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의회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과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4조(선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장(이하 "남부교육지원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거나 구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시민으로서의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에게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수료증)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표창)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의장은 청소년의 의회참여 확대를 통해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민주적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의회교실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협조) 청소년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과 남부교육지원청장은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